#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3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 강준현·김남근·김기표

오세희 • 박범계 • 박용갑

채현일 • 조인철 • 김 윤

김주영 · 복기왕 · 민병덕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아동 관련 기관 중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로 인하여 학교와 경찰서 인력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인력채용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지난해 말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받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동 법률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 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1. 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 2. 제1항제8호의 유치워
- 3.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 ⑥ (생 략)	제한 등) ① ~ ⑥ (현행과 같
	<u> </u>
<u>&lt;신 설&gt;</u>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u>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u>
	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
	<u>동학대범죄의 경력을 확인할</u>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
	의 장이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
	회를 한 것으로 본다.
	<u>1. 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u>
	<u>2. 제1항제8호의 유치원</u>
	<u>3.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습</u>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는 기관
<u>⑦</u> (생 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